법령해석 회신문

질의요지	□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보안USB 및 DLP서버를 인터넷망에 두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양쪽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업무망과 인터넷망은 방화벽 및 망연계 장 비를 통해 송수신)에 대한 확인
회답	 □ 망연계시스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자유롭게 접속할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질의하신 환경에서 하나의 보안 시스템을 인터넷망과 업무망 모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망간 접속이 가능한 경우 물리적 망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10917/MINON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보안USB 및 DLP 서버를 인터넷망에 위치하고, 인
질의요지	터넷망과 업무망 양쪽에서 사용 가능 여부(업무망과 인터넷망은 방화벽 및 망
	연계 장비를 통해 송수신)
	당 행은 물리적 망분리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은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보안USB 및 DLP 서버를 업무망과 인터넷망 각각 구축하지 않고, 서버 한
	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안 1
법령해석 요청의	ㅇ 인터넷망에 보안USB 및 DLP 서버를 두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client가 같이 사
원인이 되는	용(단, 업무망에서는 망연계 장비와 방화벽을 통해 서버와 송수신, 인터넷망의 경
구체적 사실관계	우 1차 UTM, 2차 방화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방화벽에 서버 연결 예정)
(비조차의견사의 경	[1시 UIM, 2시 8외 1—도 1 8외 1
우 구체적개별적 행	방안 2
위)	
	업무망에 보안USB 및 DLP 서버를 두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client가 같이 사용
	(단, 인터넷망에서는 망연계 장비와 방화벽을 통해 서버와 송수신)
	위와 같이 구축할 경우 법령위반 및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궁
	금합니다.
관련 법령의	2013년 9월 작성된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조문 또는	보안연구원)
공문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업무 PC 보안관리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
	니다.
신청인의 의견	
또는	「관리자의 승인 및 관리 하에 망간 자료 전송시스템 활용 등 보안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이나	시, 업무망 업무PC에서 특정 인터넷 접속이 가능함」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인터넷망에 보안USB 및 DLP 서버를 위치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문	■비공개 희망 사유()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비공개 희망 기간 ()
< 우이사하>	

<유의사항>

- 1. 요청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동신청인의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작성 시 의문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56-9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